

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

의안 번호	16
----------	----

제안년월일 : 2000. 5. 17
제안자 : 이상온의원 외 6인

1. 주 문

지방자치법 제50조제2항 및 사하구의회 위원회조례 제7조제2항과 제9조의 규정에 따라 200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제82회 사하구의회 임시회에서 효율적이고 종합적인 심사를 위하여 위원 7명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함

2. 제안이유

지방자치법 제1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하구청장이 제출한 200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심사를 통하여 효율적이고 계획적인 예산 운용을 유도하고 정확한 재정수요 및 수입예측에 바탕을 둔 합리적인 재원배분으로 투자효과의 극대화를 도모하고자 함

3. 주요내용

- 가. 구성위원정수 : 7명
- 나. 위원선임 : 각 상임위원회별 배정위원을 추천 받아 본회의 의결로 선임
- 다. 상임위원회별 위원배정 : 총무사회위원회 3명, 도시산업위원회 4명
- 라. 활동기간 : 2000. 5. 22일부터 5. 27일까지(6일간)

4. 관계법령

- 가. 지방자치법 제50조 제2항
- 나. 사하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 및 제9조